

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 예고

「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위험저수지를 지정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영 동 군

2020년 8월



1. 목 적 : 저수지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.

2.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대상지

저수지명	위 치	규모			관리자	지정사유
		수혜면적 (ha)	총저수량 (천m ³)	제당높이 (m)		
신항	용산면 신항리 14-1번지 일원	8.4	11.8	7	영동군	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
안화	황간면 노근리 136-1번지 일원	6.5	11.4	5	영동군	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
수동	학산면 봉림리 70번지 일원	4.9	5.2	4	영동군	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
명덕	양산면 누교리 86번지 일원	2.8	22.2	7.5	영동군	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
소죽	상촌면 유곡리 331번지 일원	3	3.3	4	영동군	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

3.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

가.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

나.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·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

다.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

4.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: 재해위험저수지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안전 및 재난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군(건설교통과)과 협의하여야 함.

5. 공고방법 : 영동군청 홈페이지(<http://www.yd21.go.kr>) 및 게시판

6.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: 2020. 8. 4. ~ 8. 23.(20일간)

7. 의견제출 :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동군 건설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한 : 2020년 8월 23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우편 또는 팩스(☎043-740-3509)

다. 제출처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(영동군청 건설교통과)

라. 문의처 : 영동군청 건설교통과(☎043-740-3533)

마.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붙임 : 의견 제출서(서식) 1부. 끝.

